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772
----------	-------

발의연월일 : 2025. 12. 2.

발 의 자 : 김준혁 · 김문수 · 김준형
박희승 · 백혜련 · 염태영
이수진 · 이연희 · 정을호
정준호 · 최혁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습지원 대상 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학교의 장은 효율적인 학습지원교육의 수행을 위하여 학습지원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지정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습지원대상학생 실태조사·지원 및 기초학력 보장 관련 사업의 성과관리 등을 위하여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음.

그러나 다수의 학교에서 학습지원 담당교원 지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실제 지정된 경우에도 수업 시간 수, 행정업무 등으로 담당교원의 업무 과중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기초학력지원센터가 일부 시·도에만 운영되고 있어, 지역별 교육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원거리 지역의 접근성 부족 및 업무 과중으로 실질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학교의 장이 학습지원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지역별 학생 수·학업성취도·교육격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기초학력 보장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간 격차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10조).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지정할 수 있다”를 “지정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학습지원 담당교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학습지원 담당교원의 수업 시간 수 및 업무분장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제2호 중 “제4항에”를 “제5항에”로 한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지역별 학생 수·학업성취도·교육격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학습지원 담당교원) ① 학 교의 장은 효율적인 학습지원 교육의 수행을 위하여 「초· 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 중에서 학습지원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이하 “학습지원 담당교원”이라 한다)을 <u>지정할</u> <u>수 있다. <후단 신설></u>	제9조(학습지원 담당교원) ① --- ----- ----- ----- ----- ----- <u>지정하여</u> <u>야 한다. 이 경우 학습지원 담</u> <u>당교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u> <u>위하여 학습지원 담당교원의</u> <u>수업 시간 수 및 업무분장의</u> <u>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u> <u>한다.</u>
②·③ (생 략) 제10조(기초학력지원센터) ① (생 략) <u><신 설></u>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조(기초학력지원센터) ① (현 행과 같음) <u>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u> <u>1항에 따라 기초학력지원센터</u> <u>를 지정·운영하려는 경우에는</u> <u>지역별 학생 수·학업성취도·</u> <u>교육격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u> <u>려하여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u> <u>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u>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초학력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생략) 2. <u>제4항에</u>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③·④ (생략)	③ ----- ----- ----- ----- -----. ----- -----. 1. (현행과 같음) 2. <u>제5항에</u>----- -----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	--